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29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가 2022. 6. 20.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52,233,390원, 지방교육세 4,060,250원, 농어촌특별세 2,026,670원 합계 58,320,310원(가산세 12,688,3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노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2020. 10. 6.경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2. 6. 20. 원고들에게 취득세 52,233,390원, 지방교육세 4,060,250원, 농어촌특별세 2,026,670원 합계 58,320,310원(가산세 12,688,31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2. 7. 4. 위 취득세 등 합계 58,320,31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제9 내지 15호증,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20. 9. 7. E 주식회사와 각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명: 노인복지시설 공사, 공사기간: 2020. 11. ~ 2022. 3., 도급금액: 4,95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 2020. 12. 17.경 ○○○시 F장으로부터 각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2021. 1. 15.경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각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한 후 2022. 7. 19. ○○○시 F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20. 11. 10.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2. 7. 19.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각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각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건축비 상승, 원자재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2020. 11.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 달여 만인 2020. 12. 17.경 ○○○시 F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 A의 건축면적은 501.46㎡, 연면적은 합계 1,997.24㎡인 4층 규모의 건물이고, 원고 B의 건축면적은 495.14㎡, 연면적은 합계 1,999.17㎡인 4층 규모의 건물이다.

②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인 2021. 1. 15.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③ 원고들은 2021. 2.경 철근 수요 급증, 중국의 철강 수출 규제로 인한 철강가격 폭등, 2021. 11.경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운송시장이 마비되는 등 물류 대란으로 건설현장에 원활한 원자재 공급 및 건설 중장비 운용의 어려움, 2021. 11. 25.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운송 대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부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E 주식회사로부터 인상을 통보받은 건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 완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각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한 후 공사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원래 공사도급계약상 준공일도 착공일부터 1년 4개월 후이다)에서 약 4개월 후인 2022. 7. 19. ○○○시 F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④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정된 공사규모, 공사기간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1년 내에 각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철강가격 폭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 사정으로 증가된 공사대금도 각 노인복지시설 당 2억 4,800여만 원에 이르러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4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것을 원고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⑤ 원고 A는 2022. 8. 23. 'G'라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원고 B은 2022. 11. 22. 'H'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신고를 완료하였고, 위 노인요양시설들은 2022. 8. 31.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들은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완공된 각 노인복지시설에서 위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최○○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복지법(2023. 10. 31. 법률 제1981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 (이하 생략)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03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비고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끝.